

2023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
설치 및 운용 계획안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99
----------	-----

2023년 7월 5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3. 5.30.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23. 6. 1.
4. 상정일자 :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6.27.)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23. 6.30.)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-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정수용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,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(안)에 대해 승인받고자 하는 것임
-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 수입으로 하며, 시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쓰일 예정임
- 시행 첫해인 2023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정기·공금 예금에 예치하여 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01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) 제안이유

- 가.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가. 본 기금은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 수입으로 하며,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쓰여짐
- 나. 시행 첫 해인 '23년 기부금*은 전액 정기·공금예금 예치 예정
 - * '23년도 예상 기부금액 : 약 1억 2천만원 (일평균 모금액 토대로 산출)

<연도별 예상 모금액 규모>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계
예상 모금액	123,005	132,599	142,942	154,091	166,110	718,747
운용수익	1,632	2,678	2,887	3,112	3,355	13,664
계	124,637	135,277	145,829	157,203	169,465	732,411

3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'22년 12월, 「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6조¹⁾가 정한 고향사랑기금을 신설·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「지방자치법」²⁾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³⁾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⁴⁾에 따라 ①기금운용총칙과 ②자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고,

1)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기금의 조성)

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2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4) 행정안전부,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2. 7) p.292

- ①기금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으며, ②자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함에 따라 「지방기금법」 제9조5)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6)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

1) 기금 조성 개요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'23년도에 1억 2,400만원을 조성하여 사용계획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7)에 근거하여 금년도말 조성액을 1억 2,4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됨

〈표 3-1〉 고향사랑기금 연도 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)

' 2 2 년 도 말 조 성 액 ①	' 2 3 년 도 조 성 계 획			' 2 3 년 도 말 조 성 액 ⑤=④+①
	수 입 ②	지 출 ③	증 감 ④=②-③	
-	124	0	124	전액예치

5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

-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.
-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.
-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(章)·관(款)·항(項)으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·부문·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한다.

6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1.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 2.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·부문·정책사업·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 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7) 행정안전부,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2. 7), p.290

〈표 3-2〉 고향사랑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고향사랑기금	'23년도말 조성액 [㉠]	용자금 미회수채권 [㉢]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[㉡]	총 조성규모 $d = a + b - c$
124	124	-	-	124

2) 기금 수입계획

- 수입계획의 경우, 기부금 수입(6,200만원)과 일반회계 전입금(6,000만원), 공공예금 이자수입(100만원)을 계획한 것으로 지난 5월 30일 시의회에 제출된 「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」의 세출예산 중 고향사랑기금 전출금(60,660천원)을 편성하여 전출함으로써 기금운용이 가시화 될 것으로 사료됨

〈표 3-3〉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과목				'23년 수입액 (A)	전년도 수입액 (B)	증 감 (A-B)
장	관	항	목			
합 계				124	-	124
세외수입				64	-	64
			경상적세외수입	1	-	1
			이자수입	1	-	1
			공공예금 이자수입	1	-	1
			임시적세외수입	62	-	62
			기타수입	62	-	62
			기부금 수입	62	-	62
보전수입 등 내부거래				60	-	60
			내부거래	60	-	60
			전입금	60	-	60
			기타회계 전입금	60	-	60

(3) 기금 지출계획

○ 지출계획의 경우, 예치금 항목으로 1억 2,400만원 전액을 계상한 바,

- 예치금은 기금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, 향후 유동적인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과목으로 '23년도의 경우, 기부금은 전액 정기·공급예금 예치금으로 지출계획 한 것으로 검토됨

〈표 3-4〉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지 출 계 획						'23년 지출액 (A)	전년도 지출액 (B)	증 감 (A-B)
조직	부문	정책	단위	세부	편 성 목			
합 계						124	-	-
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							-	-
	재정·금융					124	-	-
		재무활동				124	-	-
			보전지출(고향사랑기금)			124	-	-
				여유자금 예치		124	-	-
				예치금		124	-	-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1) 소위원회 구성

- 일 자 : 2023. 6.27.(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- 위원구성 :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(11명)
 - 위 원 장 : 이성배(주택공간)
 - 부위원장 : 강동길(주택공간), 김영옥(보건복지)
 - 위 원 : 송경택(행정자치), 김지향(기획경제),
이영실(환경수자원), 이종배(문화체육관광),
박철성(도시안전건설), 김영철(도시계획균형),
김용일(도시계획균형), 경기문(교통)

2)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

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29.(목) 14:00 ~ 16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30.(금) 12:00 ~ 1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VI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

VI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2023. 6.30.)

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89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본 기금은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 수입으로 하며,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쓰여짐
- 나. 시행 첫 해인 '23년 기부금*은 전액 정기·공금예금 예치 예정
- * '23년도 예상 기부금액 : 약 1억 2천만원 (일평균 모금액 토대로 산출)

<연도별 예상 모금액 규모>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계
예상 모금액	123,005	132,599	142,942	154,091	166,110	718,747
운용수익	1,632	2,678	2,887	3,112	3,355	13,664
계	124,637	135,277	145,829	157,203	169,465	732,411

3.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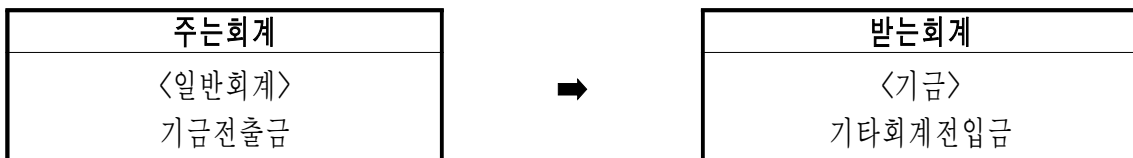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(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)
- 「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6조~제8조

나. 예산조치

- 기금 운용 전 모금된 기부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(과목 : 기부금 수입)으로 처리되고 있으며,
- 기금 운용 이후에는 기 모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, 새로 모금되는 기부금은 기금으로 직접 수입처리 예정임

<회계 간 기부금 전출입 절차>



※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수립 전 모금액에 한함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설치 및 운용계획(안)1부. 끝.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정다열 (☎ 2133-6877)

Ⅰ. 운용 총칙

1. 기금설치 개요

(1) 설치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(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)
- 「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6조~제8조

(2) 설치 목적

-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**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·운용**
-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**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**

(3) 설치년도 : 2023년

2.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

(1) 기금사업의 목표(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)

-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-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 보건 등의 증진
-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-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※ 고향사랑기금 100분의 15 이내 운영비(홍보비 등, 답례품 비용 제외) 사용

(2)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운용기간 : '23년 기금운용계획(안) 수립 시 ~ 계속
- 운용규모 : 매년 기부금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
 - 시행 첫해인 '23년 기부금*은 전액 정기·공급예금 예치 예정

* '23년도 예상 기부금액 : 약 1억 2천만원

※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5개 시·도 '23년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예치

<'23년도 기부금 산출 근거>

- ▶ (1월) · 총액(건수) : 17,517,600원(237건) · 일평균액(건수) : 565,083원(7.6건)
- ▶ (2월) · 총액(건수) : 7,490,100원(154건) · 일평균액(건수) : 267,503원(5.5건)
- ▶ (3월) · 총액(건수) : 8,730,100원(221건) · 일평균액(건수) : 281,616원 (7.1건)
- ▶ (4월) · 총액(건수) : 4,391,900원(134건) · 일평균액(건수) : 146,396(4.4건)
- '23. 1. 1.~4. 20. 현 기부금 총액 (36,724천원)에서 일 평균액(337천원) 산출하여 일평균 모금액에서 12. 31.까지 기부금 예상 산출
 ⇒ 36,724천원/109일 = 337천원, 337천원 x 365일 = 123,005천원

- 운용방식 :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관리·운용

지방재정법 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- 운용절차 :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에 의함



3. 기금 조성 및 운용

(1) 기금 조성 현황

○ 연도 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'22년도말 조성액 ㉑	'23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3년도말 조성액 ㉒=㉑+㉓	비 고
	수입㉔	지출㉕	증감 ㉓=㉔-㉕		
-	124,637	0	124,637	124,637	전액 예치

○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고향사랑기금	'23년도말 조성액㉑	융자금 미회수채권㉒	지역개발채권미 상환잔액㉓	총 조성규모 ㉔=㉑+㉒-㉓
124,637	124,637	-	-	124,637

○ 연도별 예상 모금액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계
예상 모금액	123,005	132,599	142,942	154,091	166,110	718,747
운용수익	1,632	2,678	2,887	3,112	3,355	13,664
계	124,637	135,277	145,829	157,203	169,465	732,411

< 산출 근거 >

- '23년 예상 모금액 : 1. 1. ~ 4. 20. 일 평균액 337,000원 유지 시 1억 2천 3백만원
- '23년도 상반기 모금액은 시금고 정기예금 6개월 예치(4. 28. 기준 3.91%), 하반기 모금액은 기업 MMDA 예금(4. 28. 기준 3.44%)에 예치를 가정하여 이지수의 산출

- ▶ '23. 1. 1. ~ 6. 30. 모금액 60,660천원 × 3.91% × 0.5 = 1,185,903원
- ▶ '23. 7월 모금액 10,390천원 × 3.44% × 5/12 = 148,920원
- ▶ '23. 8월 모금액 10,390천원 × 3.44% × 4/12 = 119,138원
- ▶ '23. 9월 모금액 10,390천원 × 3.44% × 3/12 = 89,352원
- ▶ '23. 10월 모금액 10,390천원 × 3.44% × 2/12 = 59,569원
- ▶ '23. 11월 모금액 10,390천원 × 3.44% × 1/12 = 29,784원

- 이후 4년간 예상 모금액은 일본 고향납세제 사례*를 참조하여 연평균 7.8% 증가로 예상하고 있으며, 운용수익은 시금고 일반 공금예금 고정금리(2.02%) 적용

* 제도 시행연도인 '08년(814억원)부터 '21년(8조 3024억원)까지 납세액이 102배로 확대되었음('22. 11. 25. KREI 농정포커스, 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」)

(2) 재원조성

-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기부금 및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(3) 지원기준 :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선정

(4) 지원대상 : 서울 시민 등

II. 자금운용계획

○ 자금수지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항 목	'23년 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	항 목	'23년 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합 계	124,637	-	-	합 계	124,637	-	-
전입금	60,660	-	-	비용자성사업비		-	-
보조금		-	-	용자성사업비		-	-
차입금		-	-	인력운영비		-	-
용자금회수 (이자 포함)		-	-	기본경비		-	-
예탁금원금회수		-	-	예탁금		-	-
예치금회수		-	-	예치금	124,637	-	-
예수금		-	-	차입금원리금 상환		-	-
이자수입	1,632	-	-	예수금원리금 상환		-	-
기타수입	62,345	-	-	기타지출		-	-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장	관	항	목	'23년 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	산출내역
200 세외수입					-	-	
	210 경상적세외수입				-	-	
		216 이자수입			-	-	
		216-01	공공예금 이자수입	1,632	-	-	시금고 예치금 이자 수입
220 임시적세외수입					-	-	
		216 기타수입			-	-	
		224-03	기부금 수입	62,345	-	-	하반기 기부금
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					-	-	
	720 내부거래				-	-	
		721 전입금			-	-	
		721-03	기타회계 전입금	60,660	-	-	일반회계 전입금 (상반기 기부금)
수 입 합 계				124,637	-	-	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조직	부문	정책	단위	세부	편 성 목	'23년 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감
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							-	-
	재정·금융						-	-
		재무활동					-	-
			보전지출(고향사랑기금)				-	-
				여유자금 예치(고향사랑기금)			-	-
				602	예치금	124,637	-	-
지 출 합 계						124,637	-	-

○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조 성 액							집 행 액							잔액 ①- ②	
	계 ①	전 입 금	보 조 금	차 입 금	용 자 금 회 수 (이 자 포 함)	예 수 금	이 자 수 입	기 타 수 입	계 ②	비 용 자 성 사 업 비	용 자 성 사 업 비	인 력 운 영 및 기 본 경 비	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	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		기 타 지 출
2019 년																
2020 년																
2021 년																
2022 년																
2023 년	124,637	60,660					1,632	62,345	0	0	0	0	0	0	0	124,637
계	124,637	60,660					1,632	62,345	0	0	0	0	0	0	0	124,637

※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(회수) 및 예탁금(상환, 원금회수)은 제외됨

○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치(탁)처	예치금 및 예탁금				비 고
		'21년도말 현재액	'22년도말 현재액①	'23년도말 현재액②	증 감 (②-①)	
예치금	시금고			124,637	124,637	